#### 오산시의회 공고 제2020-7호

## 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

「오산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0년 2월 29일

오산시의회의장

# 오산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(장인수 의원 발의)

### 1. 제안이유

○ 사회적 현안 및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최적화된 대안 마련과 미래사회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빅데이 터를 기반으로 하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체계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.

## 2. 주요골자

- 가. 시장의 책무 및 빅데이터 이용자와 공공기관의 의무, 빅데이터 책임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).
- 나. 빅데이터 활용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, 매년 이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(안 제7조 및 제8조).
- 다. 빅데이터 활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,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).
- 라. 빅데이터의 활용기반 구축, 수집·관리, 활용실태 조사에 관하여 규정함 (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)

- 마. 빅데이터의 활용과 제공을 위한 빅데이터센터의 설치·운영, 빅데이터의 제공범위와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).
- 바. 빅데이터 활용과 센터 운영 등의 사무를 필요시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 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0조).
- 사. 빅데이터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다른 기관과의 협력, 빅데이터 활용실적 평가 및 포상, 종사자의 비밀 준수에 관하여 정함(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).

#### 3. 조례안 : 붙임

#### 4. 의견제출

○ 제출기일 : 2020년 3월 6일까지

○ 제출방법: 서면, 우편,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

○ 기재내용 : 주소, 성명, 연락전화번호, 의견

○ 제출기관 : 오산시의회(전문위원실)

· 우편번호 : 447-701

· 주 소 : 오산시 성호대로 141(오산동, 오산시의회)

·전화: 031)8036-8023, ·팩스: 031)375-2875

· 전자메일 : pk1121@korea.kr

#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

□ 조	례	명 :	오산시	빅데이터	활용에	관한	조례안

□ 의견제출자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:

○ 전 화 번 호 :

○ 선 최 한 호·									
조례안 내용	찬 성 찬성	여 부 반대	의	견	비고				
	L 0								

# 오산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과학적 예측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경 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오산시의 빅데이터 기반 구축과 빅데이터 활 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"빅데이터"란 디지털환경에서 생성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수치, 문자, 영상 등의 대량의 데이터 집합 및 이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말한다.
  - 2. "비식별화"란 데이터 값 삭제, 가명처리, 총계처리, 범주화, 데이터 마스 킹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 써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.
  - 3. "공공기관"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.
    - 가. 「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」에 따른 오산시(이하 "시"라 한다) 본청·소속기관·하부행정기관
    - 나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・공단
    - 다. 「오산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시에서 출자·출연한 기관
- 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오산시장(이하 "시장" 이라 한다)은 시의 각종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 과정에 빅데이터를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 - ② 시장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의 보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가운데 빅데이터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.
  - ③ 시장은 누구든지 빅데이터를 편리하고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- 제4조(이용자의 의무) 이용자는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 등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,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한다.
- 제5조(공공기관의 의무) ① 공공기관의 장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빅데이터 를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 - ② 공공기관의 장은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책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,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제6조(빅데이터 책임관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하는 빅데이터 책임관을 둔다.
  - 1. 빅데이터 정책의 총괄 및 다른 정책과의 연계
  - 2. 빅데이터의 수집 · 저장 · 분석 및 활용
  - 3. 빅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
  - 4. 빅데이터의 비식별화 보장에 관한 사무
  - 5. 빅데이터 시책발굴 및 사업별 사전협의 조정 지원 등 총괄 사무
  - 6.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등 전문성 제고
  - ② 빅데이터 책임관은 빅데이터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으로 하되, 주관부서가 보좌기관일 경우에는 해당 담당관으로 한다.
  - ③ 시장은 빅데이터의 수집·분석 및 활용 등을 전담하는 조직과 인력을 둘 수 있다.
- 제7조(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) ①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
  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- 1. 빅데이터 활용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
  - 2. 빅데이터 서비스 제공 및 활용
  - 3. 빅데이터 민간 활용 촉진
  - 4.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

- 5. 빅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보호
- 6.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재정 확보
- 7. 빅데이터 활성화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·훈련에 관한 사항
- 8. 그 밖에 빅데이터의 구축, 관리,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사항
- 제8조(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시행계획)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 하여야 한다.
  -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- 1. 직전 연도의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, 제공 성과 평가
  - 2.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의 해당 연도 시행계획
  - 3. 해당 연도 빅데이터 관련 예산의 운용 계획
  - 4. 그 밖에 빅데이터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제9조(빅데이터 활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빅데이터의 구축 및 관리, 활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,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 하여 오산시 빅데이터 활용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 - 1.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
  - 2.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 · 점검에 관한 사항
  - 3. 빅데이터 활용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
  - 4. 개인 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방지에 관한 사항
  - 5. 그 밖에 빅데이터 활용 관련 주요 사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10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-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각각 선출한다.
  -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문 분야를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  - 1. 시 공무원

- 가. 빅데이터 책임관
- 나. 기획 및 정책 평가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장
- 다. 정보·통신 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장
- 2. 전문가, 교수 등 빅데이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3. 오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
- 4. 그 밖에 시장이 빅데이터 기반 구축과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-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⑤ 시 공무원인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-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빅데이터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장으로 하되, 주관부서가 보좌기관일 경우에는 해당 팀장으로 한다.
- 제11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,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  -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- ④ 위촉 위원은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 건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  - ⑤ 위촉 위원은 제4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  -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「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

다.

-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- 제12조(위원의 위촉 해제) 시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
  - 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  - 2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 - 3. 제11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
  - 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
- 제13조(빅데이터의 활용기반 구축) ① 시장은 빅데이터를 수집·분석 및 활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(이하 "시스템"이라 한다)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  - ② 시장은 시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데이터 분석을 위하여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.
  - ③ 시장은 공공 또는 민간 부문에서 요청하는 경우 빅데이터 공유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.
- 제14조(빅데이터의 수집·관리) ① 빅데이터 책임관은 시스템 운용을 위하여 빅데이터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  -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료 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빅데이터 책임관에게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 단, 요청 받은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빅데이터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- ③ 빅데이터 책임관은 빅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여 빅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.

- 제15조(빅데이터의 활용) ①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  - 1. 행정·경제·관광·교통·교육·복지 등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 스 제공
  - 2.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포럼, 세미나 및 공모
  - 3. 빅데이터 활용 교육
  - 4. 빅데이터 활용의 성공사례 발굴·포상 및 홍보
  - 5. 그 밖에 빅데이터의 활용 인식 제고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업
  - ② 시장은 시에서 보유한 빅데이터의 활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민간과 협의하여 민간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도입・활용할 수 있다.
- 제16조(빅데이터 실태조사)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빅데이터 활용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- 제17조(빅데이터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) ① 시장은 빅데이터의 원활한 활용과 제공을 위하여 오산시 빅데이터센터(이하 "빅데이터센터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  - ② 빅데이터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지원
  - 2. 빅데이터 서비스 기획 및 분석 지원
  - 3. 빅데이터의 서비스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지원
  - 4. 시민 맞춤형 빅데이터 시범사업의 추진
  - 5. 빅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지원
  - 6. 빅데이터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
  - 7. 빅데이터 관련 일자리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추진
  - 8. 빅데이터의 활용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연구
  - 9. 그 밖에 데이터의 활용에 필요한 사무
  - ③ 시장은 빅데이터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를 둘 수 있다.

- 제18조(빅데이터의 제공범위 등) ① 시장은 시에서 보유·관리하고 있는 빅데이터를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- 1.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
  - 2. 「저작권법」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 보
  - ② 시장은 빅데이터센터 및 시스템을 통하여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.
  -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.
  - ④ 시장은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나 개인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.
- 제19조(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) ① 시장은 공무원들의 빅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  - ②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.
  - ③ 시장은 빅데이터 교육과 전문 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제20조(사무의 위탁) ① 시장은 빅데이터 기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  - 1. 제15조에 따른 빅데이터의 활용에 관한 사업
  - 2. 제16조에 따른 빅데이터 활용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
  - 3. 제17조에 따른 빅데이터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
  - 4. 제19조에 따른 빅데이터 관련 교육과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무

-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」에 따른다.
- 제21조(다른 기관과의 협력) 시장은 빅데이터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빅데이터 정책과 관련된 민간기관·단체·유관기관 및 정부 등과의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.
- 제22조(평가 및 포상)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빅데이터 활용 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.
  - ②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 및 정책지원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·기업·단체 및 공무원 등을 「오산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- 제23조(비밀준수의 의무) 빅데이터 정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 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
- 제2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